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폐지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3. 8. 29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3년 8월 11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3년 8월 24일

라. 상정일자: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8. 28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유옥준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폐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○ 본 폐지조례안은

- 경륜 영등포지점의 운영 종료로 수입금이 없고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 및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,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·운용되어 온 기금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둡니다.

○ 검토 결과

-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은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진흥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2001년 설치됨.
- 2021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륜장 휴관 및 경륜 영등포지점의 운영 종료(2021.5.31.)로 인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익금 배분에 따른 수입은 없었으며,
- 2023년 6월 신정교 하부 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집행을 끝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존속 기한이 도래(2023.12.31.)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.
-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5조는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한 경우 기금을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본 조례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됨.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97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8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경륜 영등포지점의 운영종료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입금 배분이 없고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3. 7. 13.~8. 2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관리·운용되어
온 기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한다.